

FIP-2011-0005(통권 제185호, 2011. 11. 18)
기업 R&D 전략리포트 ⑥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비교

ISSUE PAPER

Contents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2
1. R&D 조세지원제도의 개념	2
2. R&D 조세지원제도 규모 국제비교	2
3. R&D 조세지원제도 특성의 국가별 다양성	3
III.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6
1. R&D 조세지원 방식별 효율성에 대한 기존 연구	6
2. 연구인력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7
3. 한시적 Vs. 항구적 조세지원제도	8
4. 지방정부의 R&D 조세감면제도	9
IV.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10
V.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	14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
1. 결론	16
2. 정책적 시사점	17
< 참고문헌 >	18

- 본 리포트는 R&D 조세지원제도 관련 각종 정책자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요, 주요국의 정책 및 시사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기업 R&D 전략리포트」는 시리즈 형태로 계속 발간될 예정이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연을 부탁드립니다.
- 본 리포트는 본회 미래산업팀 김준호 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455 FAX : 02-6234-5344 E-mail : cupiditas@fki.or.kr

I. 검토배경

- 기술기반 국가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R&D 조세지원제도 확대가 필요
 - R&D 조세지원제도는 R&D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국가 간 R&D 경쟁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확대
 - 시장의 성장으로 과거에 정부에서 이끌던 혁신을 시장이 주도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직접적인 R&D 지원 대신 시장 중심의 지원책이 필요

II.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는 확대 추세에 있으며 주요 OECD 국가들의 R&D 조세지원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
 - OECD 국가들 가운데 R&D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0여개 국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확대 추세
-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내부에서도 조세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공존
 - OECD 국가 가운데 총액기준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등이며 증액기준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과 아일랜드
 - 전체 추세와 달리 포르투갈,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은 총액기준과 증액기준 모두에 대해 혼합적인 형태의 제도를 운영

III.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 R&D 인력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회보장부담에 대한 지원, R&D 세제지원의 항구성 여부에 따라 R&D 세제지원의 효과가 다양

● ● ● 요약 ● ● ●

- R&D인력의 급여에 대한 세액 공제는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오며 연구인력의 혁신에 대한 보상체제로 작용
- 주요 국가들의 최근 추세는 기업의 인력채용 비용부담에 있어 사회보장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적 R&D 조세 인센티브를 이용

IV.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 최근 OECD 국가들은 협의의 R&D 개념을 넘어서 혁신활동지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R&D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실시
- 현재 OECD 국가들이 갖고 있는 R&D 조세지원제도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혜택의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 증진이 특징

V.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

- 우리나라는 내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실시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R&D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산업계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로 판단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향후 주기적으로 추가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 기술에 관계없이 R&D비용에 현행보다 높은 5~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추가적 세액공제 필요
- 신성장동력·원천기술과 일반 R&D비용을 별도의 회계 구분없이 기업 자체의 회계시스템에서 제출한 자료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I. 검토배경

- 기술기반 국가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정책 중 효과가 크고 활용여지가 넓은 R&D 조세지원제도 확대가 필요
 -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과거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반면 경제발전이 고도화된 이후에는 기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
 - * 한국의 경제성장률에서 총요소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KIET, '10) : 22.4%('91~'95)→47.1%('96~'00)→56.8%('01~'05)→61.3%('06~'09)
 - 한국의 GDP대비 R&D 투자비율은 높은 편이나 전세계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절대비중은 낮아 다양한 방식의 민간 혁신 유도가 필요
 - * '10년 총 R&D투자액 글로벌 비중(PPP기준, Battelle Memorial Institute) : 미국(34.8%), 일본(12.3%), 중국(12.2%), 한국(3.7%), 인도(2.9%), 유럽(2.9%)
 - * '10년 GDP대비 총 R&D투자(%) : 미국(2.85), 일본(3.41), 중국(1.50), 한국(3.13)

- R&D 조세지원제도는 R&D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국가 간 R&D 경쟁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확대
 - R&D 조세지원제도는 R&D 비용을 감소시켜 R&D의 기대수익을 제고하고 R&D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통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
 - * R&D조세지원액 추이(조원) : 1.28('06)→1.61('07)→1.83('08)→1.84('09)→2.14('10p)
 - * 기업의 R&D투자액(백만 불, KOITA) : 244('08)→233('09)→267('10)→348('11p)
 - 세계적으로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각국의 R&D 세제지원 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 경쟁은 증가하는 추세
 - * 30개 OECD 국가 중 22개가 R&D 세제지원, R&D세제지원이 없던 독일 등도 도입추진
 - * OECD국가 중 R&D 조세지원국가 추이 : 12개국('95)→18개국('04)→22개국('10)

II. R&D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1. R&D 조세지원제도의 개념

- R&D 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R&D 촉진을 목적으로 R&D 비용의 일부를 납부세액이나 소득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세액공제는 R&D 지출의 일정비율로 나타나며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하여 조세지원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¹⁾
 - 소득공제는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하는 방법으로서 총소득으로부터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당기비용을 초과하여 공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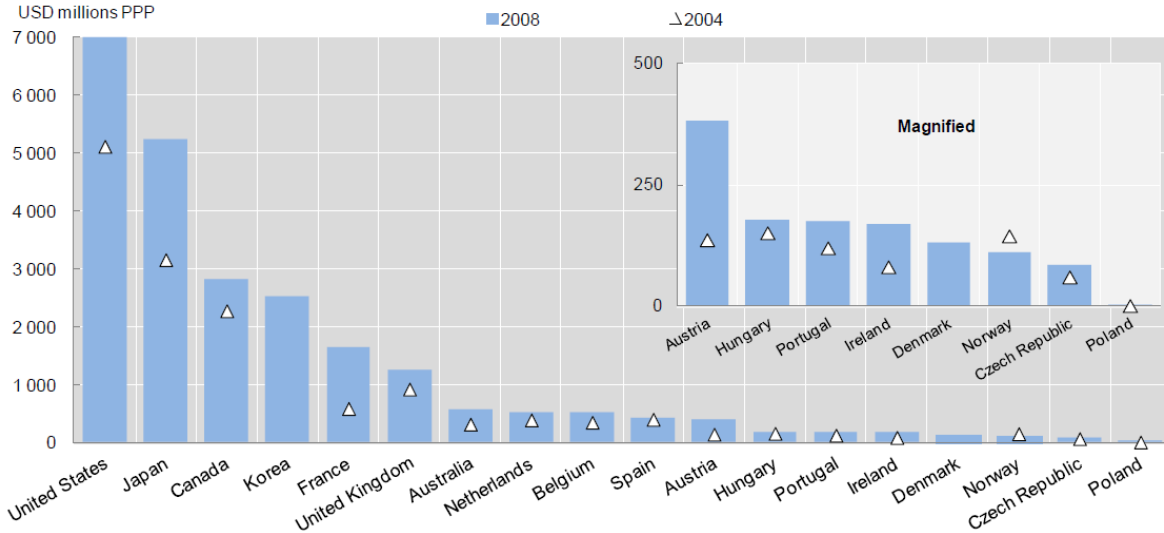
2. R&D 조세지원 규모 국제비교

- OECD 국가들 가운데 R&D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0여개 국가를 상회하고 있으며 확대 추세
 -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국가는 '95년 12개에서 '04년 18개로 확대되었고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가 R&D 조세지원제도 활용
 - 非 OECD 국가들 중 주요 국가들인 브라질, 중국, 인도, 싱가포르, 남아공 등의 국가에서 R&D 투자에 대한 호혜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용
 -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R&D 조세지원제도를 갖고 있지 않던 독일과 핀란드도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중국의 경우 신기술개발특구지역에 위치한 R&D 기업들과 특정 첨단기술 분야인 바이오, ICT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조세지원제도를 운영

1) 고윤미, 이정재, "OECD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 및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규모는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프랑스, 영국 순('08년)이며 이들 국가들의 R&D 조세지원규모는 10억 달러를 상회
- 프랑스는 한시적으로 '09년도 R&D 조세지원규모가 60억 달러를 상회

< 민간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조세지원규모 국제비교 ('04, '08)²⁾>



자료 : OECD (2010)

3. R&D 조세지원제도 특성의 국가별 다양성

-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내부에서도 조세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공존
- OECD 국가들 가운데 총액기준의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 등
- OECD 국가들 가운데 증액기준에 대해서만 R&D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아일랜드
- 전체 추세와 달리 총액기준과 증액기준 모두에 대해 혼합적인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포르투갈, 일본, 스페인, 네덜란드 등

2) 위의 R&D 조세지원제도규모 추정치는 지방정부의 조세지원규모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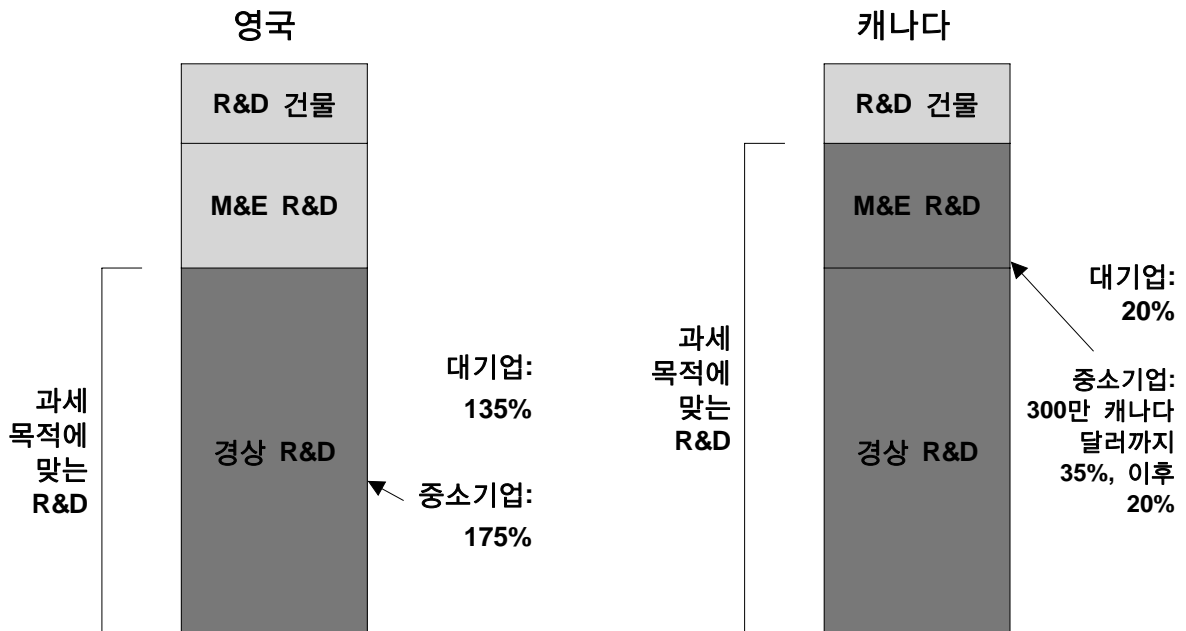
- 포르투갈은 경상 R&D 지출에 총액기준으로 32.5%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추가로 R&D 증액분에 대해 50%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시행
- 네덜란드는 R&D 세액공제의 대상이 R&D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R&D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최초 22만 유로까지는 42%의 세액공제를 하고 이후 1천 4백만 유로까지는 14%의 세액공제를 실시

R&D 조세지원 방식

- ◆ R&D 조세지원제도는 공제대상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존재
 - * 소득공제방식(enhanced tax allowances) : 기업의 조세부과대상 총수입에서 소득공제하는 방법
 - * 세액공제방식(tax credits) : 기업세액에서 R&D 지출의 일정비율을 직접 공제하는 방법
- ◆ 공제의 대상기준에 따라 총액기준방식과 증액기준방식이 존재
 - * 총액기준방식(volume-based) : R&D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식
 - * 증액기준방식(incremental-R&D-based) : R&D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방식

□ OECD 국가들의 가장 공통적인 R&D 조세지원제도 유형은 경상 R&D나 기계장비에 대하여 총액기준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방법

< 민간기업 R&D 투자에 대한 총액기준 조세지원제도 유형: 영국과 캐나다 >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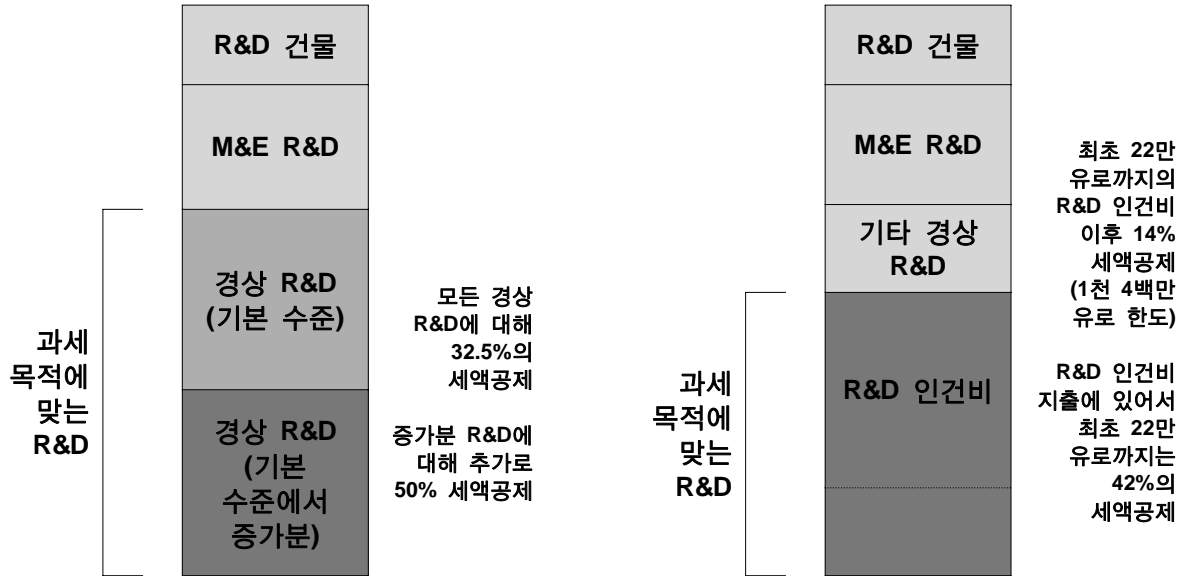


자료 : OECD (2011)

3) M&E R&D : Machinery & Equipment R&D (기계 및 설비에 대한 R&D 투자)

< 민간기업 R&D 투자에 대한 특수 조세지원제도 유형 :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총액기준과 증액기준 혼합형 R&D 소득공제 방식
 네덜란드 : R&D 임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자료 : OECD (2011)

-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혼합적으로 운영
 - 벨기에는 R&D 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R&D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과 사회보장기여도를 감소하는 분리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
 - 네덜란드는 R&D 연구인력 임금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500시간/년 이상 R&D에 시간을 투자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R&D 소득공제를 시행
- 연방정부차원의 R&D 조세지원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R&D 조세지원 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
 - 캐나다는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주내에서 이루어지는 R&D 활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R&D 세액공제를 실시
 - 미국은 40개의 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R&D 조세지원을 실시

Ⅲ.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1. R&D 조세지원방식별 효율성에 대한 기존 연구

- 조세지원기준에 대한 판단은 정책목적, 조세규모 및 각 경제별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추세는 증액기준에서 총액기준으로 변화
- 총액기준방식은 보다 단순하고 변동성이 적어 적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유리한 반면 투자를 유인하는 힘이 작다는 단점이 존재
 - 총액기준방식은 제도를 신청하기에 단순하고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존재
 - 정부입장에서 모든 R&D 자금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추가적인 R&D 투자확대의 인센티브가 작다는 단점이 존재
- 증액기준방식은 정부 입장에서 보다 정책 효율성이 높지만 복잡화된 체계로 행정비용이 높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
 - 증액기준방식은 민간기업이 추가적으로 증액한 R&D 자금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함으로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 제도설계와 실행이 복잡하여 공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행정비용이 증가
- 정책목표가 국가 R&D 규모를 늘리는데 있다면 총액기준방식이 적합하고 높은 R&D 성장을 하는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증액기준방식이 적합
 - 혼합형 방식은 R&D 규모자체와 고성장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지향할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Criscuolo et al., 2009)

2. 연구인력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 R&D인력의 급여에 대한 세액 공제는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오며 연구인력의 혁신에 대한 보상체제로 작용
 - 기업이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 사회보장연금, 원천과세 등과 연구인력이 실질적으로 받는 순임금과의 세금 격차(tax wedge)를 줄이는 기능
 - R&D 인력의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에게 있어서 초기 단계 비용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사후적으로 R&D 활동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R&D 인력 급여 세액공제는 혁신에 대한 초기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
- R&D 인력 급여 세액공제는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고 기업입장에서 우수 인력의 보유를 유인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유리
 -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R&D 인력에 대한 급여 세액 공제는 관리하기 쉽고, 기업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에 덜 종속적
 - R&D 인력 급여에 대한 세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인적 재능을 창출하고 보유하게 하는 장점이 존재
- 주요 국가들의 최근 추세는 기업의 인력채용 비용부담에 있어 사회보장 관련 부담⁴⁾을 줄여주기 위해 재정적 R&D 조세 인센티브를 이용
 - R&D의 경우 연구비 중 연구인력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연구 인력에 대한 R&D 급여 세액공제가 중요
 - 현금 유동성 증가는 수익이 적고 지적·인적 자본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연구중심 기업에 매우 중요
 - R&D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인적 자본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기업 내 연구 인력과 인적자원을 유지하는데 기여

4) 예를 들면, 사회보장연금, 기타 노동사회보장세

- 과학자·엔지니어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 안정적인 기업에서는 R&D 인력급여 세액공제가 R&D 연구인력의 임금을 높여주어 우수 연구인력을 유인
 - R&D 인력급여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금 귀착에 따른 부분만큼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기업과 R&D 연구인력의 보수를 증가시킴
 - R&D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는 기업의 R&D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강화될 수 있음

- R&D 인력 급여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총액기준 혹은 증액기준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모든 R&D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제공하거나 신규 고용 연구원에 대한 지원 중 선택 가능
 - R&D 인력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도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할 것인가와 R&D 조세지원규모를 최소화할 것인가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함

3. 한시적 Vs. 항구적 조세지원제도

- R&D 조세지원제도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항구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이 좌우
 -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은 R&D 적용범위 및 지원규모와 더불어 제도의 지속성에 좌우
 - 장기 개발이 필요한 유망 원천기술개발 등의 R&D 프로젝트가 한시적인 조세감면을 받는 상황에서 계획대상기간이 조세감면 시한을 넘게 되면 기업은 해당 R&D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해외에서 수행할 가능성 상존

4. 지방정부의 R&D 조세감면제도

- 지방정부 단위에서 존재하는 R&D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R&D 조세감면제도와 함께 검토 필요
 - 지방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세금 경감은 지역 기업의 R&D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불명확
 - 지역별로 차등화된 R&D 조세감면에 따라 이웃 지역의 R&D 감소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국가 전체의 순효과는 불명확
 - 국가 및 지방 정부가 R&D 조세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의 순효과는 심화된 연구를 필요로 하고, 동일한 문제가 다국적기업의 R&D를 끌어들이기 위한 국제 경쟁이 증가하는 국가 차원에서도 발생 가능

IV. G7 및 기타 선별국가의 R&D 세액감면제도 비교⁵⁾

1. 미국

- 미국은 일시적으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세 가지 방법⁶⁾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율을 적용
 - * R&D 조세지원 규모(미달러) : 51억불('05, GDP의 0.17%)→71억불('08, GDP의 0.18%)
 - * 오바마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해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10.9)
- 세액공제의 상한은 R&D 비용의 50%, 경상연구비는 20%, 세액의 25%이며 모든 당해 연도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
- 미국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 반면 모든 기업은 20년간 이월이 가능하고 계산된 기준액⁷⁾은 기성 기업과 신생 기업이 다름
- '09에는 에너지연구에 대한 연구비 공제액을 확대하였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대신 미사용 연구비공제에 대한 환급가능 공제를 허락

2. 일본

- 영구적인 R&D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중소기업에게 12%, 대기업에 대해서는 8~10%⁸⁾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증가분⁹⁾에 대해서는 5%를 적용
 - * R&D 조세지원 규모 : 1,050억엔('03, GDP의 0.02%)→6,299억 엔('07, GDP의 0.12%)
- 공제대상은 당해 연도의 R&D비용과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 포함
- 특징으로는 환급이 없으나 R&D 비용이 직전년도보다 많을 경우 1년 이월이 가능하고 '09~'10년의 경우 '11년까지 이월 가능

5) 자료 : OECD NESTI R&D tax incentive questionnaire, 2010 and national administrative documents. Preliminary information.

6) ① regular credit(계산된 기준 금액 이상 비용의 20%), ② alternative incremental research credit (AIRC), ③ 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IC)

7) 증가된 연구비 예측

8)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비중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

9) 직전 3년 R&D 평균을 기초로 함

3. 중국

- 중국은 과세 대상 소득 총액에 대해 당해연도 R&D 비용의 150%만큼을 공제율로 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상한이 없음
- 다른 세금감면 프로그램으로는 신기술지역 또는 바이오테크, ICT, 기타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단지에 위치한 R&D기업에 세금 감면¹⁰⁾
- R&D 연구비에 대한 150% 소득공제는 '08년 이전 신기술지역에 위치한 기업만 이용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ICT, 기타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으로까지 확대

4. 프랑스

- 첫째해에는 전체 R&D 비용의 50%, 두 번째 해에는 40%, 그 다음해부터는 1억 유로까지 30%, 1억 유로가 넘으면 5% 세액공제
 - 공공기관의 실험실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작업은 전체 R&D비용의 60% 공제
 - * R&D 조세지원 규모(억 유로/GDP대비 비율) : 5.5/0.03%('04) → 56/0.29%('09)
- 당해 연도 비용 및 모든 자본자산을 감가상각하며 신규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립금은 두 배로 계산(고용 후 24개월)
- 세액공제는 총액에만 기초해서 계산하고 3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은 16백만 유로에서 1억 유로로 늘어났으며('08) 임시적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3년 유예기간을 주는 대신 즉각적으로 환급('09)

5. 영국

- 영국은 영구적인 R&D소득공제를 실시하며 중소기업은 175%, 대기업에게는 130%의 공제율을 제공하며 R&D 비용에 대한 공제 상한이 없음
- * R&D 조세지원 규모 : 3.9억 파운드('02, GDP의 0.04%)→8.2억 파운드('08, GDP의 0.06%)

10) 소득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이러한 소득세율 인하는 신기술지역에 위치한 첨단기술기업 및 소프트웨어개발기업에도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R&D비용 100파운드에 24파운드의 환급이 가능하고 모든 기업은 한도 없이 이월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모든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
- '08에 대기업의 공제율이 125%에서 130%로, 중소기업은 150%에서 175%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정의가 확대¹¹⁾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

6. 이탈리아

- R&D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용(기계·장비 감가상각비 포함)의 10%를 적용하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인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07)
- 특징으로는 환급과 이연이 없고 모든 경상비는 전액 세액공제

7. 캐나다

-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시행
- 세액공제 시 캐나다인 소유 소기업의 첫 R&D에 대해 300만 달러를 한도로 35%, 이후 2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대기업의 공제율은 20%
* R&D 조세지원 규모(캐나다 달러) : 23억불('02, GDP의 0.21%)→32억불('08, GDP의 0.22%)
- 세액공제의 감면대상은 연구개발비용(기계·장비 감가상각비 포함)이고 미지급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R&D 세액공제액에는 상한이 없음
- 세제지원제도의 주된 특징으로는 캐나다인 소유 소기업에는 현금 환불¹²⁾을 해주며 모든 경상비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
- 최근 주요 변화로는 이익에 대한 공제 한도 35%가 2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로 확대되었고('08년) 35% 세율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정의를 확대하였으며 캐나다 이외에서 수행되는 R&D의 10%까지 공제 가능

11) 종업원 250명 및 총매출 5천만 파운드에서 종업원 500명 및 총매출 1억 파운드로 중소기업의 정의가 확대

12) 소득세 환불(3년)과 손실 이월(20년)을 해주며 언제든 이용가능

< 기타 국가의 R&D 세금감면제도 비교 >

(기준 : 2009년)

국가	세금감면 형태	적용비율	감면 대상	공제/상한	R&D 조세지원 규모
독일	R&D 세금감면 조치 없음.				0
	최근 주요 변화 : 신 독일연방정부는 2012년 이전에 R&D 세액공제 도입을 약속함				
벨기에	R&D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	명세서상 R&D인건비의 75%	연구 인건비 및 사회보장 적립금 (사내 연구원 및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포함함).	인건비 원천과세의 축소.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 인건비 규모에 대한 상한선 없음.	2004: 3.07억 유로 (0.11% GDP) 2008: 4.6억 유로 (0.14% GDP)
	R&D 비용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은 115.5%, 세액공제율은 5.9% (기업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선택 가능)	물적자산 (녹색기술 포함 가능) (Frascati Manual (FM) 상의 R&D 개념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	조세수입(R&D 소득공제) 또는 지급가능한 세금 (세액공제)	-
	특허소득 공제 (R&D 세금감면 보다 폭넓음)	80% 공제 (소득세를 6.8% 수준까지 축소)	총특허소득 (라이선스, 로열티,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에 포함된 특허보수)	과세소득	-
주된 세금감면의 기타 특징 : 원천과세된 급여는 환급된 것과 같음 (임금세 시스템). 미사용 공제는 5년 후 환급될 수 있음					
최근 주요 변화 : 2009년, 원천과세된 급여의 증가 (65% → 75%); 2010년, 공제율의 증가 (113.5% → 115%); 모든 연구원에 단일 세율 적용 (75%) (사내 연구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신규 혁신 기업 연구원 (R&D 강도가 최소 15%가 되는 소기업). 2007년, 특허 수입 공제 계획 도입					
네덜란드	R&D 인건비에 대한 원천과세 시 세액공제 (일시적 조치를 포함한 영구 계획)	2009: R&D인건비에 대해 15만 유로 한도로 원천징수에서 50%를 세액공제하고 한도 이후 18% 적용(최초 64%) 2010: R&D 인건비에 대해 22만 유로 한도로 50%를 세액공제하고 한도 이후 18% 적용(최초 64%)	연구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장적립금	인건비 원천과세 축소 / 과세대상 R&D 인건비에 1천 4백만 유로 한도	2003: 3.29억 유로 (0.07% GDP) 2008: 4.45억 유로 (0.07% GDP) 2009: n.a.
		2009: 자기고용(적어도 500시간 연구개발)의 경우 소득세에서 11,806유로를 공제(첫번째는 5,904유로를 추가 공제)	-	미지급법인세	-
	혁신소득 구간(R&D 세금감면 보다 폭넓음)	2010: 유효소득세율을 5% 수준까지 낮춤	인정된 R&D프로젝트에서의 수입(FM R&D보다 적용범위 넓음)	조세수입	-
주된 세금감면의 기타 특징: 원천과세된 급여는 환급된 것과 같음 (임금세 시스템). 혁신소득구간에서의 미사용 공제는 5년까지 이월 될 수 있음.					
최근 주요 변화: 이율과 한도는 2009년과 2010년에 점진적으로 상향되었음 (R&D 임금비용이 최초 11만 유로에는 42%, 나머지는 14%임 (한도는 8백만 유로). 2009년 R&D 정의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을 포함하는데 까지 확대됨.					
브라질	R&D비용 소득공제	비용 총액의 160%	당해 연도 비용	과세소득	n.a.
인도	R&D비용 소득공제	비용 총액의 150%	당해 연도 비용, 기계, 장비	과세소득	n.a.

자료 : OECD(2011),

원출처 : OECD NESTI R&D tax incentive questionnaire, 2010 and national administrative documents. Preliminary information.

V. 한국의 R&D 조세지원제도¹³⁾

- 우리나라는 내국기업¹⁴⁾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액공제¹⁵⁾를 실시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증가분 방식이나 당기분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당기분 방식의 세액공제액의 크기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5%
 - 증가분 방식에서 세액공제액은 당해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을 제한 금액의 50%
 - 중소기업 외에는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가능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가능
 - 당기분 방식은 6% 한도로 당해 연구·인력개발비에 3%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반을 더한 비율을 곱한 금액
 - 非중소기업 적용 증가분 방식에서 공제액은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출한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산출세액¹⁶⁾과 그 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¹⁷⁾ 산출세액의 합

13) 조세특례제한법 §10

14)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15) 세액공제대상비용의 범위

연구개발의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인력개발의 경우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등에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등

16)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50%

17)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 × 40%

□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기술 및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12년 말을 기한으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 내국인이 '12년 말까지 98개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 및 원천기술¹⁸⁾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시 해당 비용의 30%(대기업은 20%)를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

(단위 : 억 원)

제도명	주요 내용	감면액 ('10, 잠정)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9)	'13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한도로 손금산입	769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또는 과세연도 발생분의 25%를 세액공제(대기업은 증가분의 40% 또는 당해 연도발생분의 3~6% 적용)하는 제도로 일몰제도 없이 영구화	18,597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내국인이 '12년 말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3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10의2)	내국인이 '12년 말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약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추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거나 연구개발용 자산을 구입하는 때에 익금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11)	'12년 말까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950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12)	'12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	1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의2)	'12년 말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기업으로서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22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 감면	306

자료 : 2010년 산업기술백서('11),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10)

1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별표8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 최근 OECD 국가들은 협의의 R&D 개념을 넘어서 혁신활동지원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R&D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실시
 - 최근 OECD 국가들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R&D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시스템 구축비용과 무형자산투자에 대해서도 R&D 조세지원
 - R&D 적용범위는 기존 R&D 조세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선진화된 기술 솔루션 시스템¹⁹⁾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²⁰⁾로 확대
 - 중국의 경우에도 신기술 개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첨단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모두 낮은 소득세를 적용
 -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특허로부터 도출되는 매출액의 경우 세금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혁신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인을 제공
 -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R&D 프로젝트를 통한 사업에서 도출된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부담을 경감
- 현재 OECD 국가들이 갖고 있는 R&D 조세지원제도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혜택의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 증진이 특징
 - OECD 국가들의 R&D 조세지원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R&D 조세지원제도에서 탈피하여 보다 단순화하면서 혜택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
 - 프랑스('08)와 호주('10)는 기존의 복잡화된 체계의 “총액기준 및 증액기준의 혼합형” 체계에서 단순화되고 혜택이 높은 “총액기준”으로 변화
 - 최근 벨기에,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등도 R&D 조세지원 규모 한도와 소득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
 - 캐나다는 R&D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과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공제의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을 확보

19)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에는 녹색기술 관련 적용 시스템

20)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 등 무형자산투자나 획득에 대한 조세감면 등이 스페인과 폴란드에서 시행

2. 정책적 시사점

- 기술에 관계없이 R&D 비용에 대해 총액기준으로 현행보다 높은 5~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투자 비용에 추가 세액공제
 - 일본도 당해연도 투자액 8~10%를 세액공제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증가한 금액의 5~10%를 추가하여 공제하는 혼합방식을 적용
 - 91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투자한 R&D 비용에 한해서는 대기업은 당해연도 투자비용의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 할 수 있음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기술에 투자한 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91개 기술을 선정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 R&D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산업계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로 판단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향후 주기적으로 추가 및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 현행 시스템은 기업이 선투자 후에 정부에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과 일반 R&D 비용을 별도의 회계 구분없이 기업 자체의 회계시스템에서 제출한 자료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일반 R&D 비용과 구분 경리를 하고 별도의 R&D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
 - 기업들은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참고문헌 >

고윤미, 이정재, “OECD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 및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김태윤,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년 산업기술백서”, 2011

기획재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OECD NESTI R&D tax incentive questionnaire, 2010 and national administrative documents. Preliminary information.

Criscuolo, C., Martin, R., Overman, H., Van Reenen, J., “The causal effects of an industrial policy”. LSE, manuscript, 2009